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의안 번호	1115
----------	------

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3.7.30)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계획의 체계화 및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대표협의체는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 및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

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 실무협의체 위원은 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팀장 및 보건의료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함

다. 협의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안 제6조)

마. 질병, 품위손상, 기타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안 제7조)

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음(안 제8조)

- 사. 각 협의체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회의소집 및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9조)
- 아. 구청장은 협의체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해야함 (안 제11조)
- 자. 각 협의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12조)
- 차. 협의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음 (안 제13조)
- 카. 협의회 출석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4조)
- 파.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사회복지사업법」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하반기 추경반영 예정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제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3.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4. 구청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건의 및 의결 등
-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팀장 및 보건의료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⑦실무협의체에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안전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로부터 출석요구·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